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명 : 기상조절온실 부속장비 제작·설치

□ 긴급입찰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 긴급입찰 사유 :

- 법령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4호

1.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기후변화(온·습도, CO_2 농도 변화)에 다른 산림생물(조림수종, 특용수·과실수 및 단기소득작물 등)의 반응특성을 평가하고 산림자원의 육종형질 개량 등 신품종 개발을 통한 생산성 유지·증진 연구를 위해 「기후변화 대비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구축하였습니다.

2. 반면,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매립 폐기물 발생 등으로 당초 공사비가 증가하여, 증가 소요분을 기상조절온실 구축 예산에서 충당함에 따라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동절기 시험연구 확대 등 설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연내 도입 및 시험가동 후 연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